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서남물재생센터 3차(총인)처리시설 설치공사(장기계속)]

- 점검일시 : 2018.11.12 (월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한종수

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유입펌프장 및 농축시설에 시공한 PHC말뚝은 뚜껑이 열려있는 곳이 있어 근로자 전도가 우려되니 뚜껑을 덮어 관리하기 바람.
-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



○ 가설통로 안전(방재시설부)

- 유입펌프장 난간에 마감캡이 미설치되어 있으니 현장 전수 조사 후 보완하기 바람.
-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1(안전난간)



○ 가설통로 안전(방재시설부)

- 총인3계열 출입계단 입구에 자재를 적치하여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니 정리하기 바람.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○ 가설통로 안전(방재시설부)

- 유입펌프장에 설치한 발판은 난간이 미설치되어 있고, 승강용으로 설치한 일자사다리는 여장 길이(L=60cm 이상 확보)가 짧아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니 보완하기 바람.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
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4(일자형사다리)



○ 사면 안전(방재시설부)

- 농축시설 외부집수정이 Sheet파일과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으니 위치이동을 검토하고, 임시집수정에는 추락방지시설(울타리 등)을 설치하여 관리하기 바람.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(울타리의 설치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농축시설 입구에 놓여있는 경유는 사용 완료 후 위험물 보관소에 보관하고,
 - 고압가스(산소, LPG)는 사용 완료 후 밸브를 잠가 가스 누출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바람.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(가스등의 용기)
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24(위험물 보관소)





○ 품질관리(방재시설부)

- 농축처리시설 벽체부에서 철근을 따라 균열이 발생된 상태이므로 균열깊이 등을 확인하여 보수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(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)



○ 기타 안전관리(방재시설부)

- 유입펌프장의 중앙말뚝 중 수직도가 불량한 파일은 추가적인 휨모멘트가 재하될 수 있으므로 보강계획(강성이 큰 자재 사용)을 검토하기 바람.

